

2026년 운수업조사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발표

국가데이터처에서는 2026년 운수업조사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8.

국가데이터처장

1.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

○ 최종 합격자(1명)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름과 전화번호 뒷번호의 앞자리와 끝자리만 표기합니다.

응시번호	성명(휴대전화번호)	비고
1	김*연(7**5)	

○ 예비 합격자(1명)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름과 전화번호 뒷번호의 앞자리와 끝자리만 표기합니다.

응시번호	성명(휴대전화번호)	비고
6	김*경(1**0)	

2. 담당업무

담 당	주요 업무
기간제근로자 (업무보조원)	○ 운수업조사 통계표 시계열 정비 ○ 운수업조사 교육자료 제작 및 조사 지원 ○ 운수업조사 조사자료 내용검토, 자료처리 등 업무지원

3. 채용기간

- 2026. 6. 22. ~ 12. 18.

4.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1]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2]
- 공정채용확인서 [붙임3]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사유서 [붙임4]
- 본인 통장 사본 1부 (보수지급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중취업확인용)

5. 제출방법 및 기간

- 제출방법: 이메일(E-mail)
- 제출기간: 2026. 6. 9.(화) 까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국가데이터처 산업통계과	박정은	042-481-2331	dori20@korea.kr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함

【붙임 1】

(채용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가데이터처는 근로사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급여지급	채용 시 추가 수집되는 정보와 함께 퇴사 후 3년

* 계좌번호는 채용자에 한정하여 근로자 인사 업무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항 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수 지급 등 의무이행을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 종류 및 등급	장애인고용 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 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고 등 의무이행을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4대 사회보험 신고 및 각종 세금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 조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붙임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지원 자

(서명)

【붙임 3】

공정채용확인서

국가데이터처에서는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채용예정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1-1번, 2번 작성 / (없을 경우) 1번, 2번 작성

1. 본인은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 있다. ☐ 없다.)

1-1.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본인과의 관계	기타

2.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별, 소속, 직종, 채용일자, 채용방식, 국가데이터처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직원 소속, 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절차 진행 및 향후 고용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국가데이터처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제33조,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자격요건) ① 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33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제출 요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성 명

(서 명)

국가데이터처장 귀하